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시공원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 》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01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1480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도시공원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안 제19조의2)	2

I.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1480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

다. 회 부 일 : 2025. 12.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 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 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3. 검토의견

가. 도시공원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 ----- ----- ----- ----- -----텔레비전, 비상벨 및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의 음성을 인식하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도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19조의2¹⁾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함.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추가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형(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이용자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AI 등을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는 비상벨의 일종으로, 이미 음성인식기술이 반영된 비상벨이 상용화되어 일부 도시공원에서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바²⁾, 현행법의 ‘비상벨’과 별개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법체계상 측면을 고려할 때, 비상벨의 개념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문구 조정³⁾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자료: 국토교통부

- 음성인식기술이 반영된 비상벨 29개 상용화(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26.1.7 기준)
- 한강공원 내 음성인식 비상벨 140개 설치·운영(’17.4~) / 고양시, 안양시 등

3) 예컨대, ‘비상벨(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의 음성을 인식하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포함한다)’로 수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음.

다만, 전국 도시공원은 총 23,400개⁴⁾이고 각 공원 내 설치된 비상벨은 총 30,900개⁵⁾임을 고려할 때, 모든 도시공원에 일률적으로 음성인식 비상 대응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별 여건과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안전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음성인식 기술이 반영된 비상벨 예시 】

주장치(무선수신기) 음성인식형/버튼형



음성인식형
버튼형

- 비상벨을 누를 수 없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음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음성인식 모듈이 추가된 장치**
- “**살려주세요**” or “**도와주세요**” 를 외치면 112 상황실에 위치 송신 및 112상황실과 양방향 통화

음성인식+버튼형 비상벨
모델명 HKS-EBV5GB | 식별번호 24505671

※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한편,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에 음성인식 비상 대응 장치가 미설치된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는 도시공원별로 장소적·기술적·재정적 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1년 이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4) 2024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5) 2025년 8월 기준, 국토교통부

- 공원 내 CCTV / 비상벨 설치현황 : 56,805대 / 30,900개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비상용 음성인식 장치는 현행법상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상벨의 한 종류로서 이미 설치할 수 있고,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추가하더라도 모든 도시공원에 1년 이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각 공원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원의 규모·입지 등에 따라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1